



사업자등록증

(법인사업자:지점)

등록번호 : 128-82-14619

법인명 (단체명) : 한국항공대학교

대표자 : 허희영

개업연월일 : 2013년 10월 26일 법인등록번호 : 120131-0000016

사업장소재지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(화전동)

본점소재지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(용현동)

사업의종류 : 업태 서비스 종목 교육서비스업
부동산업 임대
부동산업 광고용건물임대

발급사유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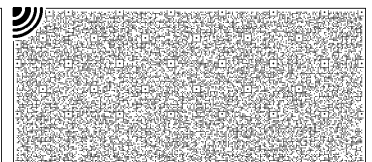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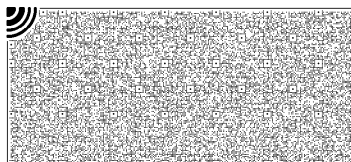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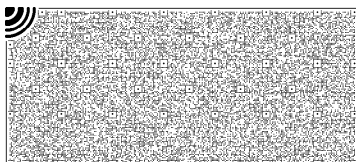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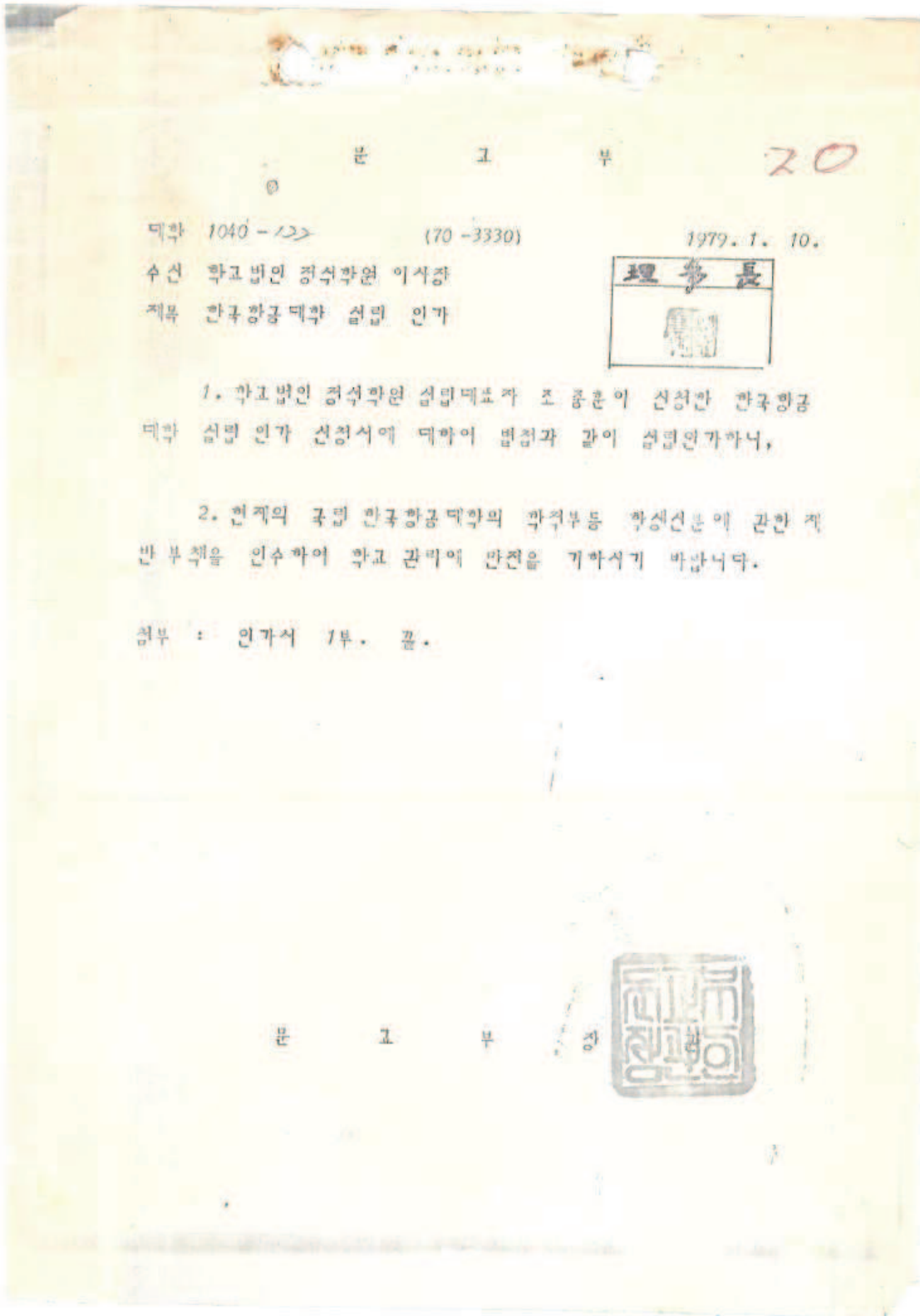
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: 여() 부(✓)

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: hangkongac1@hometax.go.kr

2022년 01월 14일

동고양세무서장





인 가 사

대학 1040 - 122

학교법인 경서학원

귀 법인 설립 대표자 조 중훈이 78. 12. 22. 제출한 한국항공대학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함.

1979년 1월 10일

문 고 부 장



인 가 사 관

1. 학교의 설립 목적 : 대한민국 교육현장에 임각하여 국가석피와 인류 발전에 필요한 항공기술 및 응용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 하고 인지도야와 견전한 사상을 함양하여 유익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.
2. 명칭 : 한국항공 대학
3. 위치 :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화전리 200-1
4. 학칙 : 별첨과 같음
5. 경비와 유지방법 : 학교법인 경서학원의 전입금과 학생의 납입금에 의함.
6. 개교년월일 : 79. 3. 1.
7. 수업년한 : 4년
8. 입학자격 : 교육법제111조의 규정에 해당자는 자
9.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: 대학학생정원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.

대학 1040 - / > >

학교법인 경석학원

10. 기타사항 : 학칙이 **경석학원**에 의함.

11. 조건

가. 본 인가 시행 당시의 국립 한국항공 대학의 제1학년 내지 제 3학년 재학생은 경석학원이 유지 경영하는 사립 한국항공 대학의 해당학년 해당학과의 재학생으로 각각 수용하여야 한다.

나. 본 인가 당시의 국립인 한국항공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본 인이 희망하는 경우 한국항공 대학에 임용하여야 한다.

다. 대학설치기준령이 정한 시설과 설비 및 교원을 확보할 것.

라. 학교법인의 학교 경영재산 기준령에 의한 수익용 기본재산 을 기준위 이상 확보할 것.

마. 교육법과 사립학교법등 관계법령과 당부의 행정 처서를 준 수할 것.

바. 이상 조건을 위반하거나 설립 인가 신청서에 허위 사실이 발 견 될 때에는 이 인가를 취소함. 끝.

인 가 사

대학 1040 - 122

학교법인 경서학원

귀 법인 설립 대표자 조 중훈이 78. 12. 22. 제출한 한국항공대학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함.

1979년 1월 10일

문 고 부 장



인 가 사 관

1. 학교의 설립 목적 : 대한민국 교육현장에 민감하여 국가석회와 인류 발전에 필요한 항공기술 및 응용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 하고 인지도야와 견전한 사상을 함양하여 유익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.
2. 명칭 : 한국항공대학
3. 위치 :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화전리 200-1
4. 학칙 : 별첨과 같음
5. 경비와 유지방법 : 학교법인 경서학원의 전입금과 학생의 납입금에 의함.
6. 개교년월일 : 79. 3. 1.
7. 수업년한 : 4년
8. 입학자격 : 교육법제111조의 규정에 해당자는 자
9.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: 대학학생정원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.

대학 1040 - / > >

학교법인 경석학원

10. 기타사항 : 학칙이 **경석학원**에 의함.

11. 조건

가. 본 인가 시행 당시의 국립 한국항공 대학의 제1학년 내지 제 3학년 재학생은 경석학원이 유지 경영하는 사립 한국항공 대학의 해당학년 해당학과의 재학생으로 각각 수용하여야 한다.

나. 본 인가 당시의 국립인 한국항공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본 인이 희망하는 경우 한국항공 대학에 임용하여야 한다.

다. 대학설치기준령이 정한 시설과 설비 및 교원을 확보할 것.

라. 학교법인의 학교 경영재산 기준령에 의한 수익용 기본재산 을 기준위 이상 확보할 것.

마. 교육법과 사립학교법등 관계법령과 당부의 행정 처시를 준 수할 것.

바. 이상 조건을 위반하거나 설립 인가 신청서에 허위 사실이 발 견 될 때에는 이 인가를 취소함. 끝.